

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7. 8. 30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년 7월 24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8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2차(97. 8. 28) 내무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자로 개정·공포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제4조(소장)을 삭제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안봉환)

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조례로써 규정되어 있었으나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

19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,267호로 개정 공포 시행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소장)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 무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 를 관장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 한다.</p>	<p>(삭제)</p>